
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 · 전문성 강화 방안

2023. 7.

금융정보분석원

제 도 운 영 과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개선방안	2
1.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정비	3
2. 보고책임자 전문성·독립성 강화	6
III. 기대효과	7
IV. 향후 계획	7

〈 용 어 설 명 〉

<p>AML (자금세탁방지) : Anti-Money Laundering</p>	<p>불법재산의 취득·처분을 은닉·가장하는 행위를 방지</p>
<p>CFT (테러자금조달금지) : Countering(Combating) the Financing of Terrorism</p>	<p>테러자금조달 범죄화 및 관련단체와의 거래금지</p>
<p>STR(의심거래보고) :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</p>	<p>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</p>
<p>CTR(고액현금거래보고) : Currency Transaction Report</p>	<p>일정금액(1천만원)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</p>
<p>CDD (고객확인 의무) : Customer Due Diligence</p>	<p>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·검증하고, 실제 소유자, 거래의 목적,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</p>
<p>EDD (강화된 고객확인 의무) : Enhanced Due Diligence</p>	<p>고객별·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,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</p>

I. 추진배경

-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(이하 'AML')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 수립이 의무화(법§5)
 - 이에 따라, 특금법규에서 이사회·경영진·보고책임자의 AML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(업무규정*§4~6)
 - *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, 이하 '업무규정'
- 다만, '10년에 제정된 규정으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,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
 - ① AML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인 이사회·대표이사·준법감시인·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한 상황
 - 현재 이사회·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
 - ② 금융사지배구조법(이하 '지배구조법') 제정 이후에도 보고책임자와의 관계 등 준법감시인의 특금법상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음
 - 준법감시인이 AML 관련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여 다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
 - ③ AML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AML 경력이 전무한 보고책임자가 다수 임명*
 - * (은행) 20개 중 12개, (생보) 22개 중 15개, (증권) 자산규모 상위 10개 중 7개(23.6월 기준)
 - 또한, 소비자보호임원·준법감시인* 제도와 달리 보고책임자에 대한 직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독자적 업무수행도 어려운 상황
 - * 소비자보호임원: 임원급, 준법감시인: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

➔ 효과적 AML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·준법감시인 등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·독립성을 제고할 필요

II. 개선방안

〈 개 선 방 향 〉

- ◇ 효과적 AML 업무수행을 위해 ①이사회 · 대표이사 · 준법감시인 · 보고책임자 역할 · 책임 정비, ②보고책임자 전문성 · 독립성 강화

		현행	개선
역할 책임 정비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독대상 불분명 ▶ 감독업무 내용 불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독대상 명확화 ▶ 감독업무 내용 구체화
	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고체계 구축 · 운영 관련 업무범위 불분명 ▶ 내부통제정책 준수책임의 내용 · 범위 불분명 ▶ 감독책임 범위 미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구축) 업무지침(안) 이사회 상정 · 업무조직 구성 ▶ (운영) 취약점 개선 · 보고 ▶ (준수) 준법감시인이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 ▶ (감독) 준법감시인을 감독
	준법감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별도 규정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업무지침 준수여부 감독 ▶ 보고책임자를 감독
	보고책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STR · CTR 책임범위 불분명 ▶ CDD 책임범위 불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본점차원 STR · CTR 위반 행위책임 (지점차원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) ▶ 본점차원 CDD 감독(지점제외)
보고 책임자 취약점 보완	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문성 · 독립성 관련 선언적 규정만 존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ML 업무경력 2년 이상
독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고책임자 직위 명문화 		

1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정비

가. 이사회

□ (현행) 이사회에게 경영진과 감사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*는 부과하고 있으나, ①감독대상의 범위와 ②③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

* 경영진이 설계·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 감독(업무규정§4②1.)
경영진 및 감사(감사위원회)의 평가 및 조치결과 검토·승인(업무규정§4②2.)

□ (개선)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, 독립적 감사 제도 운영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

① 이사회 감독대상을 대표이사·보고책임자·준법감시인으로 명확화

- 경영진 중 AML 보고체계를 총괄 구축·운영(대표이사)하고, AML 내규를 집행(보고책임자)하며, 준수여부를 감독(준법감시인)하는 자로 명시

② 지배구조법 내용 및 개선안의 대표이사 역할 등을 감안하여, 감독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

- 현재 경영진(대표이사 등) 역할인 특금법상 절차 및 업무지침¹⁾ 제·개정·폐지를 지배구조법 체계²⁾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역할로 변경

1) 업무수행시 임직원이 따라야할 절차 및 업무지침(법§5①2.), 이하 '업무지침'

2)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권한(지배구조법§15①5.)

- 이사회가 AML 보고체계의 구축·운영 실태 보고요구, 개선지시, 조치결과 검토·승인을 하도록 하는 등 감독내용 구체화

③ 실무부서의 AML 업무수행에 대한 내·외부 독립적 감사(감사위원회 포함)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·승인하고, 필요시 개선지시

- "독립적 감사"에 대한 이사회 감독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선지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

<독립적 감사제도 개요>

- ▶ (국제기준) FATF는 AML/CFT 이행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AML 실무 부서로부터 독립된 감사기능을 갖추도록 권고(권고사항 18 주석 1.(c))
- ▶ (국내법규) 내부감사(감사위원회), 외부전문가 등이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(업무규정§12~16)

나. 대표이사

□ (현행)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체계를 총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*하고 있으나, 구체적 역할 및 감독책임 범위가 불분명

* 내부통제정책의 설계·운영·평가, 내부통제 규정 승인, 내부통제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등(업무규정§5②)

○ 대표이사에게 보고체계 ①구축·②운영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,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규정에 머무는 한계

○ 또한, ③준수책임 개념이 모호하고, 특금법상 의무 관련 ④감독책임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

□ (개선) 대표이사*의 AML 보고체계 구축·운영 업무범위 및 감독 대상 업무범위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

* 역할·책임의 성격을 고려, 업무규정§5의 "경영진"을 "대표이사"로 구체화

① (구축) AML 업무조직을 구성¹⁾하고, AML 업무수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업무지침(안)을 작성²⁾하는 것으로 구체화

1) 업무조직 설치·보고책임자 임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배치 등

2) 업무지침 제·개정·폐지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

② (운영) 준법감시인·보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AML 업무수행상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지시하고, 그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

③ (준수) 내규준수에 대한 감독*은 지배구조법상 내규준수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

* 준법감시인의 고유 감독책임으로, 대표이사에게 감독 관련 별도 감독책임은 없음

④ (감독)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주요의무*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

* STR·CTR(법§4,§4의2)·자료보존(법§5의4) 등 보고책임자가 행위자가 되는 경우

- 다만,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감독

다. 준법감시인

- **(현행)** 특금법령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AML 보고 체계에 수용·조정하지 않아 역할·책임이 불분명
 - 이에 따라, 준법감시인이 단순히 보고책임자를 겸직*하는 경우가 많고 AML 업무도 형식적으로 수행
 - * (은행) 20개 중 19개, (생보) 22개 중 18개, (손보) 19개 중 18개(23.6월 기준)
- **(개선)** 준법감시인 도입취지에 따라 ①AML 업무지침 준수 여부와 ②특금법상 주요의무 관련 보고책임자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독
 - ① 준법감시인*에게 임직원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책임 부여
 - * 개별법상 준법감시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에게 부여
 - ②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, 보고책임자의 특금법상 주요의무 이행의 적법성을 감독

라. 보고책임자

- **(현행)**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STR·CTR·CDD 관련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*
 - * 보고책임자는 STR·CTR을 이행하고, CDD를 총괄한다고 규정(업무규정\$6①,②)
 - 특히, 보고책임자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점차원 의무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본점 보고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
- **(개선)** 본점 또는 지점에서 처리되는 STR·CTR·CDD에 대해 행위 및 감독 책임주체를 합리적으로 규정
 - ① **(STR·CTR)** 본점차원 점검이 필요한 보고의무 위반시 특금법상 보고를 담당하는 자인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
 - 다만, 본점 점검이 어려운 STR·CTR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점장은 행위자로서, 보고책임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

- ② (CDD) 비대면 거래 등 본점 차원에서 점검하는 CDD 의무 위반시 보고책임자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
 - 다만, 본점 점검이 어려운 CDD 위반시 지점장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

2 보고책임자 전문성·독립성 강화

- (현행) '전문성·독립성을 갖춘 자'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라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
- (개선) AML 업무의 전문성·독립성을 감안, ①**일정기간 이상 AML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**를 ②**일정 직위 이상**으로 임명*토록 개선

*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시에는 자격요건·직위 미적용

- ① (전문성) AML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보고책임자의 경력요건을 신설

- 보고책임자는 준법감시인보다 하위 직위임을 고려해 **완화된 요건** 마련

< 보고책임자 자격요건(안) >

- ① 금융회사등에서 AML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- ② AML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로 AML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- ③ 변호사·공인회계사로 AML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- ④ FIU, 금융위, 검찰·국세청 등 법집행기관,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, 협회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AML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
※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, 인력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 후 2년 6개월 유예

- ② (독립성) 보고책임자 직위를 명문화하되 여수신규모 등 ML/TF 위험노출도*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규정

* 은행권의 경우, 20개 은행이 9,100여개 금융회사등의 전체 STR의 54.7% CTR의 73.7%를 담당('22년)하는만큼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이 큰 상황

< 보고책임자 직위(안) >

- ① 은행 : 업무집행책임자
- ② 대형금융회사* : 준법감시인(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) 차하위(次下位) 직위
 - * 지배구조법상 사내이사·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
- ③ ①,②에 속하지 않는 금융회사등 : 독립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(현행 유지)

III . 기대효과

- ◇ 금융회사 內 역할·책임 명확화 →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
- ◇ 보고책임자 전문성·독립성 강화 → AML 업무전반 효율성 제고

- 1] AML 업무를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
 - 이사회부터 보고책임자까지 주요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기책임 원칙하에 적극적 업무수행
 - 특히, 불분명했던 감독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도록 유도
- 2] 보고책임자에 일정 직위 이상인 AML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여 전문성·독립성을 높여 AML 업무 전반의 효율성 제고
 - 최소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춰야만 보고책임자에 임명되도록 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* AML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
 - * 예) STR: 금융거래 유형·규모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심거래여부 판단
 -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낮고 타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AML 업무의 특성상 보고책임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

IV. 향후 계획

- 1]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→ 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등 심사
- 2] '23년 하반기 업무규정 개정 고시
 - 내규개정 등 금융회사등의 부담을 고려, 6개월 시행 유예
 -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은 2년 추가유예(총 2년 6개월 시행 유예)

※ 동 개선방안은 향후 행정예고 기간 중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수정·변경되어 업무규정 개정예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